

고성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60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0. 1. 17

발 의 자 : 고흥호의원 외 5인

1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법령에 근거하여 개정코져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의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종전 350,000원에서 550,000원으로 개정(안 제2조제1항)
- 나. 「회의수당」을 「회기수당」으로 명칭 변경(안 제명, 제1조 내지 제7조)
- 다. 종전 회의수당을 50,000원에서 70,000원으로 개정(안 제4조)
- 라. 국외여비지급기준(안 별지)

3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(대통령령 제16,672호<'99.12.31>)
(영 제15조 별표 5 및 별표 6, 8 참조)
- 대한민국 관보 제14,395호('99.12.31일자)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의회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의회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회의수당”을 “회기수당”으로 한다.

제1조중 “회의수당”을 “회기수당”으로 한다.

제2조 제1항중 “350,000원”을 “550,000원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목중 “회의수당”을 “회기수당”으로 하고,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, 회기중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.)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

동조 제2항중 “회의수당”을 “회기수당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목중 “회의수당”을 “회기수당”으로 본문중 “회의수당”을 “회기수당”으로 하고 “출석일수”를 삭제하며, “50,000원”을 “70,000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중 “회의수당”을 “회기수당”으로 하고 “행정자치부지침과”를 삭제한다.

[별표 2] 국외여비지급기준표중 숙박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(단위 : 1야당 미불화)

구 분	가등급	나등급	다등급	라등급
의 장	137	94	75	65
부의장				
의 원	120	78	58	48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-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제13조 “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『회의수당』및여비지급에관한”을 “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『회기수당』및여비지급에관한”으로 한다.
- ②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1항1호 및 제2호의 “회의수당”을 “회기수당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명 :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원 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 ①의원에게는 1인 매월 350,000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생략</p> <p>제3조(회의수당 지급) ①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(본회의 또는 위원회)에 실제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계산하여 지급하고,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결에 의한 위원회 활동차원에서 현지 조사활동에 참석한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.</p> <p>제4조(회의수당 지급 기준)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0,000원으로 한다.</p> <p>제7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원의 의정활동비·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지침과 고성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</p>	<p>제명 : _____ 회기수당 _____</p> <p>제1조(목적) _____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회기수당 _____</p> <p>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 ① _____ 550,000원 _____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회기수당 지급) ①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, 회기중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.)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회기수당 _____</p> <p>제4조(회기수당 지급 기준) _____ 회기수당 (삭 제) 70,000원 _____</p> <p>제7조(준용) _____ 회기수당 (삭 제) _____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[별표 2] 국외여비지급기준표

현		개	
구 분	숙 박 비 (1 야 당)	구 분	숙 박 비 (1 야 당)
의 장 부 의 장	가등급 130	의 장 부 의 장	가등급 137
	나등급 90		나등급 94
	다등급 72		다등급 75
	라등급 62		라등급 65
의 원	가등급 114	의 원	가등급 120
	나등급 74		나등급 78
	다등급 55		다등급 58
	라등급 46		라등급 48